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에 따른 사무국장 직위의 민간 개방을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사무국장 직위에 보임할 수 있는 대상 직급의 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감축하는 한편, 조직 자율성 확대방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명)”을 “8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급 11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6,212”를 “6,18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8”를 삭제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2”를 “3”으로 하고, 서기관 74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2”를 신설하며, “기술서기관 12”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신설하며,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1 다음에 “별정직 계 27”를 신설하며, 별

정직 계 27 다음에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18”를 신설하고,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18 다음에 “사무국장(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6,212”를 “6,18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8”를 삭제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2”를 “3”으로 하고, 서기관 74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2”를 신설하며, “기술서기관 12”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신설하며,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1 다음에 “별정직 계 27”를 신설하며, 별정직 계 27 다음에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18”를 신설하고,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18 다음에 “사무국장(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신설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제3조 관련)”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직 정원 27명(고위 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이 감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부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 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 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10퍼센트</u> ----- ----- ----- -----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 명, 7급 <u>8명</u>)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 ----- <u>8명</u>) 및 그 밖의 정원 중 <u>4급 11명</u> -----.
제3조(<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u>) (생 략)	제3조(<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u>) (현행 과 같음)
제5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사무국장 중 4개 직	제5조(<u>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u>) <u><삭 제></u>

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및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과장급 직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11개 직위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급 직위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6,212</u>	<u>6,185</u>	-27
<u>고위공무원단</u>	<u>18</u>	<u><삭 제></u>	-1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2</u>	<u>3</u>	-9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2</u>	+12
<u>기술서기관</u>	<u>12</u>	<u><삭 제></u>	-12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2</u>	<u><삭 제></u>	-2
·	·	·	

<u>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5</u>	+5
<u>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5</u>	<u><삭 제></u>	-5
·	·	·	
·	·	·	
<u>별정직 계</u>	<u><신 설></u>	<u>27</u>	+27
<u>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u>	<u><신 설></u>	<u>18</u>	+18
<u>사무국장(부이사관 또는</u> <u>서기관)</u>	<u><신 설></u>	<u>9</u>	+9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6,212</u>	<u>6,185</u>	-27
<u>고위공무원단</u>	<u>18</u>	<u><삭 제></u>	-1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2</u>	<u>3</u>	-9
.	.	.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2</u>	+12
<u>기술서기관</u>	<u>12</u>	<u><삭 제></u>	-12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2</u>	<u><삭 제></u>	-2
.	.	.	

<u>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5</u>	+5
<u>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5</u>	<u><삭 제></u>	-5
·	·	·	
·	·	·	
<u>별정직 계</u>	<u><신 설></u>	<u>27</u>	+27
<u>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u>	<u><신 설></u>	<u>18</u>	+18
<u>사무국장(부이사관 또는</u> <u>서기관)</u>	<u><신 설></u>	<u>9</u>	+9